

## ❁ 본회, 닭고기 수입 관련 정보 공개 요청

### ● 수입산 닭고기와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 97년 닭고기 수입이 개방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국내 닭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수입닭고기에 대한 정보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에서 공개되고 있으나 공개시점이 수입닭고기가 유통된 이후이거나 자세한 내역이 아닌 국가별 물량 정도만 공개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입닭고기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업체에서 정보가 늦어 닭고기 수급에 예로 사항이 있다고 판단, 이에 본회는 지난 6일 수입시기, 수입업체명, 수입국가, 부위(HS code), 중량(kg), 금액(\$), 등 상세한 수입닭고기 정보현황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해 줄 것을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요청했다.

## ❁ 종계 유효기간 초과 사용금지 방안에 대해 농림부 중간 회신

### ● 가축개량협의회 닭분과위원회에서 협의 후 제도개선 검토키로

본회에서 지난해 11월 26일 강제환우 등에 의하여 종계 유효기간을 초과한 병아리의 생산을 규제해 주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는 1월 13일자로 가축개량총괄기관인 축산기술연구소로 하여금 가축개량협의회 닭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고 본회에 중간 회신했다.

한편 본회는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종란 및 병아리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종계장에서 종계유효기간을 초과(강제환우 등)하여 생산하는 종란 및 병아리는 구매하지 않기로 결의 선언하고 이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 ❁ 2003년도 신년 인사회 및 이사회 개최

### ● 농림부 축산국 관계관과 본회 이사 및 통합경영분과위원 참석

을 1월 14일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농림부 축산국 관계관과 본회 이사 및 통합경영분과위원이 그레이스 호텔 일식당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새해 인사를 나눔과 동시에 육계산업 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200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문제를 논의 처리했다.

그리고 본회에서 실시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대한 사육농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관련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70.8%), 시행하더라도 거출금을 내면서 자조금을 조성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55.6%) 임의자 조금을 원하고 있는(33.7%) 농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을 보고하고 금후 대책에 대해 관계협회와 협의하여 조정키로 했다.

##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설명회 개최

### ● 육계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농림부에서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본회는 농림사업 중 육계(계육)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본회 주최, 축산신문 주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오는 1월 22일 오후 2시 경기 성남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03 농림사업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본회 회원사 관계자 및 계약사육농가, 일반 육계사육농가, 업계 관계자의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재용 과장과 가축방역과 이희우 과장, 농림부 협동조합과 이양호 과장의 육계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문의는 한국계육협회 031-707-5722 (www.chicken.or.kr)로 연락하면 된다.

#### 〈설명회 진행순서〉

순서	시간	발표자	발표내용
개회식	14:00~14:20		
발표Ⅰ	14:20~15:10	이재용 과장 (농림부 축산경영과)	농림사업시행지침설명 (생산·유통·가공부문)
	15:10~15:15		휴식
발표Ⅱ	15:15~16:05	이희우 과장 (농림부 가축방역과)	농림사업시행지침설명 (방역부문)
	16:05~16:10		휴식
발표Ⅲ	16:10~16:50	이양호 과장 (농림부 협동조합과)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 및 이용방법 설명
	16:50~17:00		휴식
	17:00~17:30		질의 및 응답
	17:30		폐회

## 2003년도 닭고기 체인점 사업 신청 접수

### ● 오는 1월 27일까지 본회로 신청

지난해 농림부 사업중 닭고기 체인점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생산자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2003년도부터 사업대상자를 생산자 단체 또는 계열업체까지 확대하여 닭고기 체인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본회는 닭고기 체인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닭고기 체인사업신청서를 접수,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기 발송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1월 27일까지 본회로 신청해 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031-707-5722 김한웅 부장)로 연락하면 된다. ☺